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	중개실무	강사: 한병용
	(중개대상물조사·확인 및 확인·설명서작성)	과정: 심화이론(8회차)

#### 【문제1】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조사·확인방법 중 틀린 것은?

-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·면적·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 장등본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.
- ② 소유권·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조사한다.
- ③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.
- ④ 비선호시설, 입지조건은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.
- 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.

#### 【문제2】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조사·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면적에 관한 조사·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가 기준이 된다.
- ②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.
- ③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조사·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가 기준이 된다.
- ④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와의 거래계약을 중개해야 한다.
- ⑤ 소유권에 관한 제한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로 조사·확인한다.

### 【문제3】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으로 <u>틀린</u>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증명서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·설명해야 한다.
- ②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.
-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.
- ④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.
- 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.

## 【문제4】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<u>틀린</u>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제25회)

- ㄱ. 장래의 묘소(가묘)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ㄴ. 분묘의 특성상,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.
- 다.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, 분묘기지권 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
- ㄹ.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.
- ① 7, 亡 ② ㄴ, ㄹ ③ ㄷ, ㄹ ④ ㄱ, ㄴ, ㄷ ⑤ ㄱ, ㄴ, ㄹ

#### 【문제5】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<u>틀린</u>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,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.
- ③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.
-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.
- ⑤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을 가리키지만, 분묘의 설치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 외에 비석·상석등 시설물을 포함한다.

## 【문제6】개업공인증개사가 사설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30㎡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 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기간은 제한을 받는다.
- ④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.
- 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.

# 【문제7】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<u>틀</u>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상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1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.
- ②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(單墳)형태로 합장(合葬)하여 새로 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소 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④ 분묘기지권자는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.
-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.

#### 【문제8】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(법인 제외)에게 개업공인증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
- ① 주말·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한다.
- ② 주말·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.
- ③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④ 농지의 임대차는 3년 이상으로 해야 하나,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⑤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(離農)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.

### 【문제9】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[I]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
-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.
- ③ 권리관계의 "민간임대 등록여부"는 대상물건이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차인에게확인하여 표시한다.
- ④ "내부·외부 시설물의 상태 (건축물)"란의 소방시설로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유무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한다.
- ⑤ 중개보수 및 산출내역"란에는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외에 지급시기를 기재해야 한다.

# 【문제10】공인증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증개대상물확인·설명서[I]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제25회)

- ① 권리관계의 '등기부기재사항'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, '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'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② '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'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.
- ③ '거래예정금액'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.
- ④ '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'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.
- ⑤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, 중 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.

### 【문제11】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[Ⅱ]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은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한다.
- ② 비선호시설,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(임대)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에 기재한다.
- ③ 매매의 경우 "도시계획시설", "지구단위계획구역, 그 밖의 도시·군관리계획"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에 기재한다.
- ④ 내부·외부 시설물의 상태의 소방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유무 및 그 수량의 개수를 표시해야 한다.
- ⑤ "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"는 대상물건이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(임대인)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"확인"에 √로 표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,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"미확인"에 √로 표시하여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에 표시한다.

eduwill

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

【문제12】 공인증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증개대상물확인·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증개사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?(제25회)

- ① 벽면의 균열 유무
- ② 승강기의 유무
- ③ 주차장의 유무
- ④ 비상벨의 유무
- ⑤ 가스(취사용)의 공급방식

【문제13】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[Ⅱ]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제26회)

- ① '대상물건의 표시'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.
- ② '권리관계'의 "등기부기재사항"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.
- ③ "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"은 시·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.
- ④ "중개보수"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을 계산하고,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.
- ⑤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(소속공인중개사 포함)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.

【문제14】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[Ⅲ] 서식의 '개업공인 중개사 기본 확인사항'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제26회)

- ① 입지조건
- 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
- ③ 거래예정금액
- ④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
- ⑤ 비선호시설(1km 이내)

【문제15】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증개사가 확인·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[I](주거용 건축물), [Ⅱ](비주거용 건축물), [Ⅲ](토지), [VI](입목·광업재단·공장재단)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?

- ① 대상물건의 표시
- ② 권리관계(등기부 기재사항)
- ③ 토지이용계획,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
- ④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
- ⑤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

□ 정답 -----

1.3 2.0 3.5 4.2 5.0 6.0 7.3 8.5 9.3 10.0

11. 5 12.3 13.4 14.2 15.3